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참조13)

 성남시의회 Seongnam City Council	성남시의회
	제284회(임시회)

2023.07.17.(월)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 조례(안) 등 검토보고서

## 《검토사항》

- 조례안 8건  
 (제정 2건, 일부개정 6건)
- 민간위탁 동의안 7건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전문위원 염대석)

#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 제안경위

- 제출자: 성남시장
- 의안번호: 제5188호

## 2. 제안이유

-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3. 주요내용

- 위탁대상 시설 현황(총 7개소: 신규위탁 3, 변경위탁 4)
  - 신규위탁 3개소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	정원예정 (명)	개소예정	위탁기간
e편한세상 금빛그랑메종	중원구 광명로300번길 14	106	20	2023.12월중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양지어린이공원	분당구 서현로 421번길9	114	25	〃	〃
산성역자이 푸르지오시티	신흥2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200	40	〃	〃

- 변경위탁 4개소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	정원예정 (명)	위탁기간
성남시다함께돌봄센터 (은행1동어린이식당)	중원구 자혜로57번길 1 (2,3층)	234	40	2024.1.1. ~ 2028.12.31 (5년)
성남시다함께돌봄센터 (위례역푸르지오4단지 어린이식당)	수정구 위례광장로 36	97	20	〃
성남시다함께돌봄센터 (백현마을3단지어린이식당)	분당구 동판교로 92	261.88	40	〃
성남시다함께돌봄센터 (판교동어린이식당)	분당구 운중로 254 (판교종합사회복지관 4층)	133.94	25	〃

○ 위탁개요

- 위탁기간: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 위탁내용: 다함께 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
  - 종사자 현황: 5명(센터장 1명, 시간제돌봄교사 3명, 조리사 1명)
  - 운영시간: 월~금(주 5일) / 학기 중 10시~20시, 방학 중 09시~20시
  - 프로그램: 숙제 및 독서지도, 예체능, 체험활동 등
  - 어린이식당 운영: 이용 아동 전원 급·간식 제공(일시 돌봄 포함)
-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주 사무소나 분사무소를 두고 설립된 법인에 한함
- 선정방법: 공개모집
  -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의·선정
- 예산지원액: 178,100천원(인건비, 프로그램 및 어린이식당 운영비 등)

구분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2024년)	비고
계		
178,1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터장(8시간) 월3,089천원×1명</li> <li>• 시간제 돌봄교사(4시간) 월1,434천원×3명</li> <li>• 운영비 지원: 조리사 인건비 및 프로그램비, 공공요금 등</li> <li>※ 2023년 다함께돌봄센터 경기도 인건비 추가지원 (호봉제) 운영 및 정원에 따라 센터별 상이</li> </ul>	개소당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
- 「성남시 온종일 돌봄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 5. 검토 의견

### 가. 동 사무의 주요내용 검토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서는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의 돌봄 서비스(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돌봄센터는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방과 후의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만 6세~12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시설이지만, 맞벌이가정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한부모가정과 저학년 아동이 우선순위를 갖고 있음.
- 우리 시는 각 동마다 최소 1개씩의 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인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8개소(학교돌봄터 4개 포함)를 운영 중이고, e편한세상 금빛그랑메종, 양지어린이공원, 산성역자이 푸르지오시티 등 3개소에 대한 신규위탁과 성남시다함께돌봄센터(은행1동어린이식당), 성남시다함께돌봄센터(위례역푸르지오4단지 어린이식당), 성남시다함께돌봄센터(백현마을3단지어린이식당), 성남시다함께돌봄센터(판교동 어린이식당)등 4개소에 대한 변경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사료됨.

### 나. 민간위탁의 적정성 등 검토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은 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돌봄센터의 기능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위법성 관련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는 아동복지에 관한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점에서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기준에도 부합하고, 현존하는 28개소(학교돌봄터 4개 포함) 또한 모두 민간위탁으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위탁의 타당성도 인정되는 것으로 사료됨.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5년인 점에서 위탁기간도 적정하고, 공개모집에 의하여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것 또한 민간위탁 조례의 공개모집 원칙에 부합함.

- 다만,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5조에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업 추진 실적과 사업평가를 통해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및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한 검토결과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관계 법령 발췌서

##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 성남시 온종일 돌봄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온종일 돌봄 시설 위탁·운영)[제목개정 2021.12.13.] ① 시장은 온종일 돌봄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온종일 돌봄 시설을 위탁·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12.13.>

② 제1항의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 설립한 법인이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를 수탁자로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12.13.>

## □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2.24.>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일부개정 2020.2.24.>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일부개정 2020.2.24.>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본항개정 2020.2.24.>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의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6.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 사무는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의2제6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위탁기간이 1년 미만인 단순 행정관리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16.2.17.><일부개정 2020.2.24.>

④ 시장은 자치사무 중 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 및 재위탁 할 때에는 그 만료일 9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항신설 2016.2.17.><일부개정 2020.2.24.>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20.2.24.>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⑥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0.2.24.>

**제4조의2(민간위탁 사무)**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본조신설 2016.2.17.>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복지 등 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2. 공원·녹지·환경 등 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3. 교육·문화·체육·관광·예술·영상 등 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 4. 보건·건강증진 등 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 5. 교통·근로자복지·취업지원 등 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 6. 그 밖에 행정내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방법)** <본조제목개정 2020.2.24.>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2.24.>

② 수탁기관을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일부개정 2020.2.2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0.2.24.>

**제7조(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을 위한 민간 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걸로 본다.<본항개정 2020.2.24.>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에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07, 2020.2.24.>

- 1. 해당분야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신설 2012.12.07, 일부개정 2020.2.24.>
- 2. 관계공무원<신설 2012.12.07, 일부개정 2020.2.24.>
- 3. 시의원 2명<신설 2012.12.07, 일부개정 2020.2.24.>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신설 2012.12.07, 일부개정 2020.2.24.>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07, 2020.2.24.>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2.07>

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6., 2012.12.07, 2019.07.15.>